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 용어 반영(안 제1조 ~ 제3조, 제6조, 제7조)

· 당초 : 의료보호, 대불금 → 변경 : 의료급여, 대지급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명칭 변경
(안 제7조)

· 당초 :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 변경 : 기금담당관, 기금출납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용”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둘수”를 “둘 수”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을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불금의 상환촉구)”를 “(대지급금의 상환촉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날로부터 6월이내”를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제 호	년 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	소 관		
상 환 금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	소관		
상 환 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	소관		
상 환 금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	소관		
상 환 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월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출납원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후면)

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을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전면)

우 편 엽 서

우 표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의료보호 법</u>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하 " <u>보호대상자</u> "라 한다)에 대한 <u>의료보호사업</u> 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의료보호기 금 특별회계</u> (이하 " <u>회계</u> "라 한 다)의 설치 및 <u>운용</u> 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의료급 여법</u>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u>의료급여사업</u> ----- ----- <u>의료급여기 금</u> ----- ----- <u>운영</u> ----- -----.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 료보호기금(이하 " <u>기금</u> "이라 한 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u>의료보호 대 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u> 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u>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u> (이하 " <u>회계</u> "라 한다) 는 <u>의료급여기금</u> (이하 " <u>기금</u> "이 라 한다) ----- <u>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u> ----- -----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u>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u> 규정 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주민 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 료급여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 <u>의료급여법 시행령</u> 」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u> 로 한다.
② <u>시장</u>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회	② <u>구미시장</u> (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 <u>제1항에</u> 따른 -----

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
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
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
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
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
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
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기금출납명령관은 보
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 둘 수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 기금담당관
에게, 지출원-----
----- 기금출납원-----
-----.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

- 기금담당관-----
-----.

제6조(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
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촉구)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촉구) 대지급금 ----- 대지급금-----

----- 날
부터 6개월 이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 -----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배 정 미
	담 당	신 형 수
	담 당 자	김 은 희 (480-5133)